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표·디자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한 반도체 기술 분야의 조속한 특허출원 등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면서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특허청으로 이체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청서울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을 특허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특허청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특허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재산보호협력국·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산업재산정보국”으로 하고, “특허심사기획국·융복합기술심사국·전기통신기술심사국·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특허심사기획국·디지털융합심사국·전기통신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 및 기계금속심사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8호 중 “융복합기술심사국·전기통신기술심사국·화학생명기술심사국·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전기통신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기계금속심사국·반도체심사추진단”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전기통신기술심사국)”을 “(전기통신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통신기술심사국”을 “전기통신심사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전자상거래, 전자부

품”을 “통신, 전자상거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화학생명기술심사국)”을 “(화학생명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학생명기술심사국”을 “화학생명심사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기계금속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기계금속심사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51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1명”을 “10명”으로 한다.

제8장(제3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한시조직

제35조(반도체심사추진단) ① 특허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둔다.

②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기술(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설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반도체 조립공정,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02”를 “1,607”로 하고, 일반직 계 “1,600”을 “1,60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1”을 “12”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585”를 “1,58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1”을 각각 “199”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3”을 “1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8”을 “187”로 한다.

별표 3 제1호 조직란 1), 2) 중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특허청에 <u>윤영지원과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정보고객지원국 · 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융복합기술심사국 · 전기통신기술심사국 · 화학생명기술심사국</u> 및 <u>기계금속기술심사국</u> 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u>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산업재산정보국</u> ----- <u>특허심사기획국 · 디지털융합심사국 · 전기통신심사국 · 화학생명심사국</u> 및 <u>기계금속심사국</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u>정보고객지원국</u>) ① <u>정보고객지원국</u> 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3조(<u>산업재산정보국</u>) ① <u>산업재산정보국</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u>특허심사기획국</u>) ① · ② (생략)	제15조(<u>특허심사기획국</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u>융복합기술심사국 · 전기통신기술심사국 · 화학생명기술심사국 · 기계금속기술심사국</u> 소관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8. ----- <u>디지털융합심사국 · 전기통신심사국 · 화학생명심사국 · 기계금속심사국 · 반도체심사추진단</u> ----- ----- -----
제15조의2(<u>융복합기술심사국</u>) ①	제15조의2(<u>디지털융합심사국</u>) ①

<u>융복합기술심사국</u>에 국장 1명을 둔다. ②·③ (생략) 제16조(<u>전기통신기술심사국</u>) ① <u>전기통신기술심사국</u>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기술(전기, 컴퓨터,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전자상거래, 전자부품 및 방송미디어)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생략) 제17조(<u>화학생명기술심사국</u>) ① <u>화학생명기술심사국</u>에 국장 1명을 둔다. ②·③ (생략) 제18조(<u>기계금속기술심사국</u>) ① <u>기계금속기술심사국</u>에 국장 1명을 둔다. ②·③ (생략) 제22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u>51명</u>과 심판	<u>디지털융합심사국</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u>전기통신심사국</u>) ① <u>전기통신심사국</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u>통신, 전자상거래</u> ----- ----- ----- ----- -- 2. (현행과 같음) 제17조(<u>화학생명심사국</u>) ① <u>화학생명심사국</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u>기계금속심사국</u>) ① <u>기계금속심사국</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 ----- <u>50명</u>-----
---	--

관 56명을 둔다.

② 심판장 중 1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신 설>

<신 설>

-----.

② ----- 10명-----

-----.

제8장 한시조직

제35조(반도체심사추진단) ① 특허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둔다.

②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기술(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설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집적공정, 반도체 조립 공정 및 반도체 소재)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

사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심사추진단에 특허청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02</u>	<u>1,607</u>	+5
•	•	•	
•	•	•	
일반직 계	<u>1,600</u>	<u>1,605</u>	+5
고위공무원단	<u>11</u>	<u>12</u>	+1
3급 또는 4급 이하	<u>1,585</u>	<u>1,589</u>	+4
•	•	•	

[별표 2]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1</u>	<u>199</u>	-2
일반직 계	<u>201</u>	<u>199</u>	-2
고위공무원단	<u>13</u>	<u>12</u>	-1
3급 또는 4급 이하	<u>188</u>	<u>187</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2